

「2022년 백신 및 면역치료 오픈이노베이션 랩」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지원사업 공고

화순백신산업특구 인프라 연계한 ‘글로벌 백신·바이오 산업 거점화’를 위해 백신 및 면역치료제 분야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6월 7일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생물약연구센터장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천연자원연구센터장

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글로벌 백신·바이오산업의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글로벌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
- ☐ **지원대상** : 백신 및 면역치료제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 ☐ **지원규모** : 총 35개사 선정, 기업당 최대 3억원 * 연제지원 시, 최대 4억 이내
- ☐ **지원내용** : 백신 및 면역치료제 개발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 ☐ **협약기간** : 선정일 ~ ‘22. 12. 9.까지
- ☐ **신청 및 접수기간** : ‘22. 6. 7. ~ ‘22. 6. 21.(15일간)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신청자격 세부조건 】 * 붙임3 참조

- ▶ 예비창업자 : 지원사업 선정 후, 즉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자
 - 지원사업 기간동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서’ 발급 및 법인사업자로 전환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 ▶ 법인사업자 : 공고일로부터 창업 7년 이내 기업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또는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다수의 사업자등록증(개인, 법인)을 보유한 경우, 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 지원대상 품목은 1) 백신(예방백신, 치료백신, 차세대백신), 2) 면역치료제로 인체의 면역시스템을 이용한 치료 작용기전으로 개발 중인 품목

【 치료백신 범위(예시) 】

- ▶ 치료백신 : 질병 치료를 위해 면역체계 활성화 및 항원 특이적인 면역반응 유도하여 치료하는 백신으로
 - ① 세포백신, ② DNA, RNA 등 핵산백신, ③ 바이러스백터 백신, ④ 재조합형 백신, ⑤ 면역증강제(Adjuvant), ⑥ 기타(천연물(생약), 파티클 등)

【 면역치료제(항암면역치료) 범위(예시) 】

- ▶ 면역치료제 : 인체의 면역체계를 활성화, 암세포를 사멸도록 유도하는 치료제
 - ① 면역관문억제제, ② 면역세포치료제, ③ 항암바이러스치료제

□ 신청(지원) 제외 대상

【 신청(지원) 제외 대상 세부조건 및 예외사항 】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①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②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③ 동일한 아이템 및 기술로 중앙정부, 정부사업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을 수행 또는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 2022년도에 창업지원사업 등에 선정 또는 수행중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은 신청 불가
-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선정 가능

④ 중앙정부 지원사업 등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⑤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창업기업

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⑦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 의무 및 역할

- 선정자·기업은 협약서 등의 사항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 및 완수하여야 함.
- 선정자·기업은 운영기관이 요청·안내하는 자료 제출, 협약체결(설명회 등),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기업은 협약종료로부터 5년간 이력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3.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내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 화순백신산업특구 인프라 활용 가능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

□ **지원분야** : 예방백신, 치료백신, 차세대백신, 면역(항암)치료제

□ **지원내용** : 백신 및 면역치료제 개발을 위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성장단계	세부 프로그램	기업수	최대 지원금
창업지원	- 창업 아이디어 발굴 · 고도화 - 창업 공간지원(임대료 등)	10	16,000천원
연구개발	- 신약 효능평가(<i>In vitro, in vivo</i>) - 공정개발(Scale up) - 기준규격(CMC) 설정	9	100,000천원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 GLP 효능시험 - GLP 독성시험 - 임상시험 디자인, 프로토콜 개발, 임상 CRO - 임상시험지원 - 비임상 및 임상 시료생산	8	300,000천원
제 품 화	- GMP 생산 - 품질관리 및 보증 - 제품 인증 및 인허가	5	300,000천원
해외진출	- 인허가 및 라이선싱 - 해외 임상 컨설팅 지원 - 해외 현지화 지원	3	50,000천원

* 최대 2개 세부프로그램까지 연계지원이 가능하며, 최대 4억원 내에서 지원함.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22. 12. 9.까지

□ 세부 프로그램① : 창업 맞춤형 지원

- 10개사, 기업당 최대 16,000천원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예방백신, 치료백신, 차세대백신, 면역치료제 분야 ▸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TRL 1 ~ 2)
지원규모		▸ 창업 아이디어 고도화 지원 – 5개사,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 창업공간 및 시설·장비활용 지원 – 5개사, 기업당 최대 16,000천원
세 부 지 원 내 용	창업 아이디어 고도화	▸ 관련 전문가 및 앵커기업 활용 컨설팅 ▸ 기술사업화 가능 아이템 고도화 등
	창업공간 지원	▸ 창업공간 등 소요비용 지원
	시설 및 장비 활용지원	▸ 연구시설 및 장비 활용 등 관련 소요비용 지원
	창업자금 연계	▸ 기술·시장, 펀드 등 전주기 경영 컨설팅
화순 백신산업특구 인프라 연계		▸ (보육센터) 전남의대 의생명연구원, 생물의약연구센터, 화순 바이오헬스융복합 지식산업센터(구축중) ▸ (R&D) 전남의대 의생명연구원, 의약센터
평가방법		▸ 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 → 서면평가 → 최종선정
사업 담당기관(문의처)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u>생물의약연구센터</u>

□ 세부 프로그램② : 연구개발 단계 맞춤형 지원

- 9개사,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예방백신, 치료백신, 차세대백신, 면역치료제 분야 ▶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TRL 1 ~ 4)
지원규모		▶ 신약 효능평가(<i>In vitro</i>, <i>in vivo</i>) – 5개사,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공정개발(Scale up) – 2개사,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 ▶ 기준규격(CMC) 설정 – 2개사,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
세 부 지 원 내 용	기초-원천-응용 연구지원	▶ 기초실험 및 개념정립(<i>In vitro</i>, <i>In vivo</i> 단계) ▶ LAB, Non-GLP 수준 공정개발 ▶ 의약품 CMC 개발 ▶ 목표제품/시장분석 ▶ 실용목적,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정립
	시설/장비 활용지원	▶ 연구시설 및 장비 활용 등 관련 소요비용 지원
	네트워크 활용	▶ 산·학·연·병 및 지역 인프라 연계 컨설팅 비용 등
화순 백신산업특구 인프라 연계		▶ (R&D) 화순전남대병원, 전남의대 의생명연구원
평가방법		▶ 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대면평가 → 최종선정
사업 담당기관(문의처)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u>천연자원연구센터</u>

□ 세부 프로그램㉓ : 비임상 및 임상시험 단계 맞춤형 지원

- 8개사, 기업당 최대 300,000천원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예방백신, 치료백신, 차세대백신, 면역치료제 분야 ▶ 창업 7년 이내 기업(TRL 5 ~ 7)
지원규모		▶ GLP 효능시험 – 1개사, 기업당 최대 300,000천원 ▶ GLP 독성시험 – 1개사, 기업당 최대 300,000천원 ▶ 임상시험 디자인, 임상 CRO, 임상시험 등 – 1개사, 기업당 최대 300,000천원 ▶ 임상시험지원(검체분석 등) – 2개사, 기업당 최대 80,000천원 ▶ 비임상 및 임상시험용 시료생산 – 3개사, 기업당 최대 273,000천원
세 부 지 원 내 용	비임상시험 (GLP)	▶ GLP 시험법 확립 및 프로토콜 개발 지원 ▶ 신약 후보소재에 대한 안전성 및 효능검증
	임상시험 (GCP, CRO)	▶ 임상시험을 위한 임상디자인 및 컨설팅 지원(CRO 연계) ▶ 신약 후보소재에 대한 IND 및 임상시험 지원
	GMP 생산	▶ 비임상 및 임상시험 시료 GMP 생산 ▶ 품질관리시험법 개발 및 시험분석 ▶ GMP 운영 및 품질보증 관련 컨설팅 지원
	협력 네트워크 활용	▶ 산·학·연·병 및 지역 인프라 연계 컨설팅 비용 등
화순 백신산업특구 인프라 연계		▶ (GLP)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첨단화학헬스케어연구소 ▶ (GMP, QC) 미생물실증지원센터 ▶ (GCP) 화순전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
평가방법		▶ 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대면평가 → 최종선정
사업 담당기관(문의처)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u>생물의약품연구센터</u>

* 사업화를 위한 고비용/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업 적극 지원

□ 세부 프로그램④ : 제품화 단계 맞춤형 지원

- 5개사, 기업당 최대 300,000천원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예방백신, 치료백신, 차세대백신, 면역치료제 분야 ▸ 창업 7년 이내 기업(TRL 5 ~ 8)
지원규모		▸ GMP 상용생산 – 1개사, 기업당 최대 300,000천원 ▸ 품질관리시험 및 품질보증 – 3개사, 기업당 최대 33,000천원 ▸ 제품 등 인증 및 인허가 – 1개사,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세 부 지 원 내 용	제품 생산	▸ 상용생산을 위한 생산기술 확립 지원 ▸ GMP 생산 인프라 활용 제품생산 지원 ▸ 품질관리 및 보증에 대한 지원
	제품 인증 및 인허가	▸ 제품 및 시설 인증 관련 지원 ▸ 제품 인허가 컨설팅 및 시험분석 지원
	협력 네트워크 활용	▸ 산·학·연·병 및 지역 인프라 연계 컨설팅 비용 등
화순 백신산업특구 인프라 연계		▸ (GMP, QC) 미생물실증지원센터
평가방법		▸ 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대면평가 → 최종선정
사업 담당기관(문의처)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u>천연자원연구센터</u>

* 사업화를 위한 고비용/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기업 적극 지원

□ 세부 프로그램⑥ : 해외진출 단계 맞춤형 지원

- 5개사, 기업당 최대 300,000천원 지원

구 분	지원내용
지원대상	▸ 예방백신, 치료백신, 차세대백신, 면역치료제 분야 ▸ 창업 7년 이내 기업
지원규모	▸ 인허가 및 라이선싱 지원 – 1개사, 기업당 최대 50,000천원 ▸ 해외 임상시험 컨설팅 지원 – 3개사,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 해외 현지화 지원 – 1개사, 기업당 최대 10,000천원
세부 지원내용	▸ 해외 인허가 및 라이선싱 승인 지원 ▸ 해외임상 컨설팅 지원 ▸ 해외 생산품질 선진화 지원(GMP 실사, 밸리데이션 등) ▸ 해외 현지화 지원(수출품목 등록, 현지 법인 설립 증)
화순 백신산업특구 인프라 연계	▸ (GLP)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첨단화학헬스케어연구소 ▸ (재)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 (GCP) 화순전남대병원
평가방법	▸ 서류검토 → 현장실태조사 → 서면평가 → 최종선정
사업 담당기관(문의처)	▸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u>생물의약연구센터</u>

□ 성장단계 프로그램 연계지원

- 동일한 아이টে에 대하여 최대 2개 프로그램, 최대 4억원 이내 범위에서 연계지원 가능함.
- (예시①) 창업지원(임대료 등 지원) + 연구개발(효능평가)
- (예시②) 연구개발(공정개발) + 연구개발(기준규격 설정)
- (예시③) 비·임상시험(임상시험) + 비·임상시험(임상시험지원)
- (예시④) 제품화(GMP 생산) + 해외진출(인허가 및 라이선싱)

□ 화순백신산업특구 인프라 활용

- 지원받고자 하는 세부프로그램은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인프라를 활용 가능한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함.
- 사업계획서 제출 전, 아래의 특구 담당자와 협의 후,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인프라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타지역의 인프라 활용이 가능함.

성장단계	기관명	담당자	
		성 명	연락처(이메일)
연구개발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의과대학	김응필	eungpil20@hanmail.net
		허 철	silvergull@hanmail.net
비임상시험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첨단화학헬스케어연구소	김응필	eungpil20@hanmail.net
		박명규	bluesky@ktr.or.kr
임상시험	화순전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	김응필	eungpil20@hanmail.net
		허 철	silvergull@hanmail.net
제 품 화	미생물실증지원센터	김응필	eungpil20@hanmail.net
		서국헌	khseo@vaccinecmo.or.kr

4.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기간** : '22. 6. 7. ~ '22. 6. 21.(15일간)

□ **신청방법** :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인 必

성장단계별 프로그램	접수처/문의처		
창업지원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u>생물의약연구센터</u>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55)	061-370 -1310	eungpil20@ hanmail.net
연구개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u>천연자원연구센터</u>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00-1)	061-375 -6802	winter10118 @jbf.kr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u>생물의약연구센터</u>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55)	061-370 -1310	eungpil20@ hanmail.net
제 품 화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u>천연자원연구센터</u>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00-1)	061-375 -6802	winter10118 @jbf.kr
해외진출	(재)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u>생물의약연구센터</u> (전남 화순군 화순읍 산단길 12-55)	061-370 -1310	eungpil20@ hanmail.net

□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 1]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붙임 2]
3. 연구책임자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각 1부 [붙임 3]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해당자)
5.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해당자)
6. 참여제한 등 제제정보 확인서(대표자, 책임자) 1부

*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에서 발급 가능

5. 평가 및 선정

□ 평가절차(창업, 해외진출 단계 프로그램)

① 서류검토	② 현장실태조사	③ 서면평가	④ 최종선정
지원대상 및 업력 등 증빙서류 확인	예비창업자, 기업 현장실태조사	기술성 및 사업화 가능성 중심 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	운영기관, 지원자, 지원기업	평가위원	운영기관
~ '22. 6월 말	~ '22. 6월 말	~ '22. 6월 말	~ '22. 6월 말

* 서면평가 방법 : 제출된 동영상 발표자료를 활용하여, 평가위원 서면평가

□ 평가절차(연구개발, 비·임상시험, 제품화 단계 프로그램)

① 서류검토	②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③ 발표평가	④ 최종선정
지원대상 및 업력 등 증빙서류 확인	예비창업자, 기업 현장실태조사	기술성 및 사업화 가능성 중심 평가	최종선정 및 협약체결
운영기관	운영기관, 지원자, 지원기업	평가위원, 지원자, 지원기업	운영기관
~ '22. 6월 말	~ '22. 6월 말	~ '22. 6월 말	~ '22. 6월 말

□ 평가방법

- (①서류검토) 지원대상 및 업력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신청자격 확인

구분	세부내용
대상기업 적합 여부	▶ 공고일 기준,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여부 ▶ 지원받고자 하는 아이템의 품목 적합여부
중복 과제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의 중복성 ▶ 동일한 아이템 · 기술로 창업지원사업 수행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등 미납 여부
참여제한 여부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 대표자, 책임자 등 사업참여 제한 제제 등의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부도, 법정관리 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 인자 또는 기업

- (②현장실태조사)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현장 확인
 - 창업, 해외진출 단계 프로그램 : 필수 진행
 - 연구개발, 비·임상시험, 제품화 단계 프로그램 : 필요시 진행
- (③발표평가) 전문가 7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
 - 창업, 해외진출 단계 프로그램 : 서면평가
 - 연구개발, 비·임상시험, 제품화 단계 프로그램 : 대면평가

□ 평가항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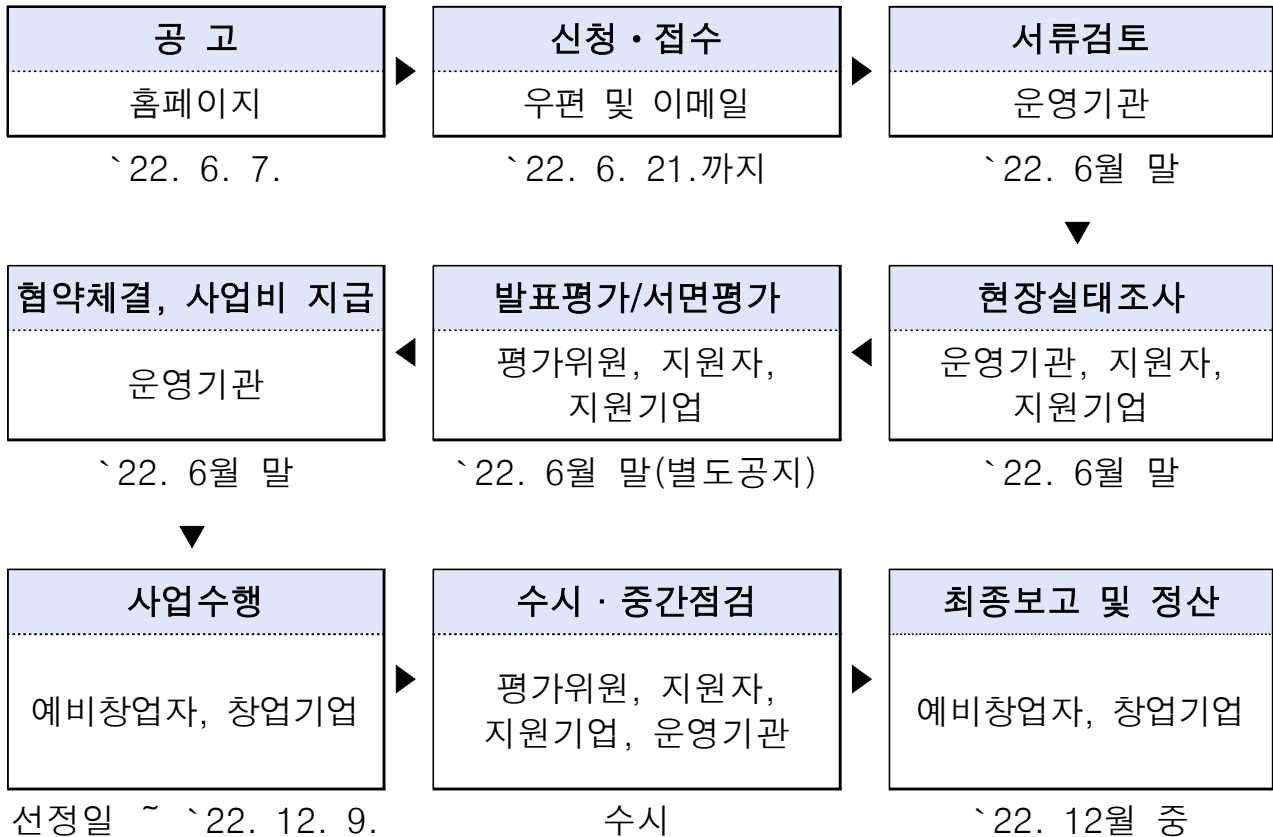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사업이해 및 목표의 적절성 (25)	• 사업 목적에 대한 이해	5
	• 지역 인프라 연계성 및 활용성 - 화순백신산업특구 인프라 연계 · 활용계획의 제시	10
	• 목표 설정의 구체성 - 최종목표 달성의 가능성 - 최종목표 설정의 구체적 제시	5
	• 정량적 목표의 적절성 - 정량적 목표 설정 및 설정 기준의 명확한 제시	5
기술사업화의 우수성 (30)	• 창업아이템 또는 선행연구에 대한 혁신성 - 기술사업화를 위한 창업아이템의 혁신성 - 기술사업화를 위한 선행연구 준비도	10
	• 기술사업화 내용의 우수성 -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기존 · 유사기술과의 우수성	10
	• 사업 추진일정의 적정성	5
	• 사업비 사용계획의 적정성	5
사업추진 역량 (25)	•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의 기술적 역량 -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역량 및 노하우 등	10
	•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의 인적 역량 - 기술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보유역량	10
	• 예비창업자 또는 기업의 네트워크 역량 -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네트워크 역량	5
연구성과 활용성 (20)	• 기술사업화 활용계획의 우수성 - 기술사업화를 위한 시장진입, 전략, 자금조달 등의 구체성	10
	• 기술사업화에 따른 파급효과 - 해당 분야에서 국내 · 외적 경쟁력 - 사회 경제적 파급효과 및 기여도	10
합 계		100

□ 최종선정

- 선정 및 예산 규모 내에서 최종 지원자 및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기업별 지원금을 배정하여 최종 확정 공고함
- * 선정평가 결과 창업기업 역량이 본 사업 운영목적 및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 예정규모 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음.

6. 운영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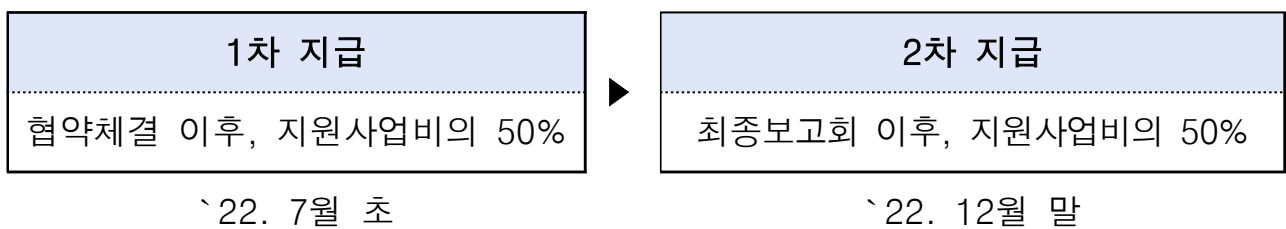
□ **운영일정(안)** * 운영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 대상 : 연구개발, 비·임상시험, 제품화 단계 프로그램,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진행

** 서면평가 대상 : 창업, 해외진출 단계 프로그램, 현장실태조사 필수 진행

□ **사업비 지급일정(안)**



7.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지원사업은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을 권장하며, 사업 신청전에 특구내 기관과 사전협의를 해야함.
- 예비창업자 및 신청기업은 성장단계별로 최대 2개 세부 프로그램, 4억원 이내에서 연계지원이 가능함.
-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로 지원사업 기간 이전 또는 진행예정인 **①비임상시험, ②임상시험, ③GMP 생산, ④품질관리시험** 등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일부비용도 지원 가능함.

예시) GLP 독성시험(단회·반복투여독성시험 등)

개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독성시험	SOP확립		단회투여 독성시험		용량결정 시험		반복투여 독성시험				회복 관찰	보고서	기타 시험
case① 사업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추적)
case② 사업지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기간						성과활용기간(성과 추적)						

- 신청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기 구축된 지역 연구센터, 시설·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어 장비구입·시설 구축은 불가함.
- 지원사업비는 인건비, 간접비, 연구수당은 계상 불가하며, 사업비 위탁정산수수료는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함. * 불임. 4 참조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물품 구입, 시험분석 등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사용해야 함(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 기업 자체 연구개발비로 진행 또는 진행예정인 **①비임상시험, ②임상시험, ③GMP 생산, ④품질관리시험** 등에 대해서는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제출해야 인정함. * 예시) 위탁생산 계약서 등

□ 평가 유의사항

- 접수 마감까지, 신청자격 관련 증빙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인한 신청자격 확인 불가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창업 및 해외진출 단계 프로그램은 서면평가로 진행되며, 운영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동영상 발표자료를 제출해야 함.
- ‘현장실태조사’ 및 ‘발표평가’ 등 소 평가 과정에 신청자(대표자)본인이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평가대상 제외 및 탈락처리 되거나 추후 발견시 선정 취소 또는 협약 취소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통보일 기산, 휴일포함), 1회에 한하여 평가를 운영한 운영기관에 신청 가능함.
- 평가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대상자의 동의하에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 평가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 선정취소하고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선정 후라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 충족 시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최종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운영기관 협약체결 안내요청 후, 1주일 이내 협약을 완료하며, 기한 내 협약 진행이 어려울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사업비 부정·목적 외 사용, 중복지원 등의 사유 발생 시, 협약 취소 및 사업비 환수조치 될 수 있음.
- 공급기업·기관과 수혜기업이 모의하여 부정하게 사업비를 지급하거나 지원받은 예산을 규정(사용목적) 외 부정하게 집행할 경우, 형사고발 진행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32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 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공고문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8. 성과활용 의무

- 성과활용 의무 : 지원사업 수행결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 보고
- 성과활용 기간 : 지원사업 종료 후, 5년까지
- 성과활용 항목 : 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성과물

9. 신청 제외 대상

- 지원목적, 공고내용 및 세부 전략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아이템 및 기술개발 내용으로 2022년도에 중앙정부 등의 지원사업을 수행 또는 선정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지원 불가
* 협약체결 후에라도 중복성이 확인될 경우, 협약 취소 및 사업비 환수조치 함.
- 기업의 부도, 휴·폐업(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 불 임 자 료 】

- 1. 사업계획서 서식**
-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3. 창업여부 기준표**
- 4. 지원사업비 계상기준**
- 5. 지원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 6. 지원사업비 불인정 기준**
- 7. 화순 백신산업특구 현황**

[붙임 1] 사업계획서 서식

**「백신 기술사업화 오픈이노베이션 랩」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서**

사 업 명					
개발분야		☐ 백 신 ☐ 면역치료제			
성장단계		☐ 창 업 ☐ 연구개발 ☐ 비·임상시험 ☐ 제 품 화 ☐ 해외진출			
세부프로그램					
기 업 명				사업장 소재지	
창업연월일 (회사설립연월일)		2000. 00. 00.		사업자 구분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신청자 (대표자)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업책임자	성 명			연 락 처	
				이 메 일	
사업비 (천원)	사업지원금	주요 성과 (‘00년 기준)		고용 (명)	0명 (대표자 제외) ※ 신청일 기준 현재 고용인원
	대응자금 (현금)			매출 (백만원)	00백만원 ※ ‘00년 총 매출
				수출 (백만원)	00백만원 ※ ‘00년 총 수출
	합 계			투자 (백만원)	00백만원 ※ ‘00년 총 투자유치
참여인력 구성					
순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주요경력
1	대표이사	○○○	(예시) 사업책임자		
2	연구소장	○○○	(예시) 사업실무책임자		
3	신규채용	7월 예정	(예시) 연구개발		
4					
5					
상기 내용과 같이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사업」에 신청합니다. 아울러, 수혜기업 선정 과정에서 지원 중복성 및 적정성 검토 등을 위한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22년 6월 00일 신청기업 : 대 표 자 : (직인)					

요 약 서

사 업 명									
개발분야		☐ 백 신 ☐ 면역치료제							
성장단계		☐ 창 업 ☐ 연구개발 ☐ 비·임상시험 ☐ 제 품 화 ☐ 해외진출							
세부프로그램									
기 업 명				대 표 자					
사업기간		2022. 7. 1. ~ 2022. 00. 00. (0개월)							
사업비 (천원)		지원사업비							
		민간부담금(현금)							
		합 계							
최종목표		•							
필 요 성	국내외 현황	•							
	기술개발 혁신성	•							
	백신산업특구 활용계획	•							
정량적 목표		•							
세부 추진내용		•							
추진일정		구분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향후 계획		•							

1. 필 요 성 (3페이지 내외)

1-1. 개 요

- (최종목표)

-

- (사업목적)

-

-

- (세부내용)

-

-

※ 최종목표 :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
※ 세부내용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 접근방식 등을 기재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1-2. 기술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국내)

-

-

- (국외)

-

-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기타현황 등의 핵심 요약 제시

1-3. 기술개발의 중요성

-

-

-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지원의 필요성 등 기술

1-4. 기술개발(창업 아이템)의 혁신성 등

-
-
-
-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1-5.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

-
-
-

※ 본 지업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선행연구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 공개 가능한 데이터만 기재

1-6. 화순백신산업특구 연계 활용계획

☐ 화순전남대병원 의생명연구원	☐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미생물실증지원센터
☐ 화순전남대병원 임상시험센터	

-
-
-

※ 본 지업사업은 화순백신산업특구의 인프라를 연계하는 사업으로, **특구내 혁신기관의 시설 및 장비 사용, 위탁연구, 위탁생산, 위탁 시험분석 등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함.
 ※ 작성 시, 사업공고에 제시한 기관별 담당자와 세부일정 협의 후 작성
 ※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인프라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타지역의 인프라 활용 가능함.

2.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2페이지 내외)

2-1. 최종목표 및 세부내용

최종목표	•
세부 추진내용	•
추진전략	•
정량적 목표	•

- ※ 최종목표 : 연구개발 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
 ※ 세부 추진내용 :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 접근방식 등을 기재
 ※ 추진전략 : 지식재산권 확보·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
 ※ 정량적 목표 : 최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내용별 정량적 목표 설정

2-2. 추진 일정

구분	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2							
3							

- ※ 세부내용 별 추진일정을 월별로 음영 표기

3.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페이지 내외)

3-1. 기술개발 성과의 활용방안(향후 연구개발 계획 위주)

- -
 -

※ 국내외 시장동향, 국내외 수요처 현황, 국내외 경쟁기관의 현황 등을 바탕으로 활용방안 기재

3-2. 기술사업화 계획

- 기술사업화 전략
 -
 -

※ 기술개발 결과를 기술사업화하기 위한 전략, 생산전략, 인허가, 투자계획 등을 기재
※ 기술술·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

3-3. 파급 효과

- 기술적 측면
 -
- 경제·산업적 측면
 -
- 사회적 측면
 -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
※ 연구개발성과의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파급효과 등을 기재

4. 제안기업 정보 (2페이지 내외)

4-1. 기업 현황 및 보유역량

-
-

4-2.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보유 현황

연구시설 · 장비명	규격	수량	활용도

4-3. 고용현황

연 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계
2020					
2021					
2022					
합 계					

4-4. 지식재산권(최근 3년 이내)

구분	특허명	국명	출원인/등록인	출원일/등록일	출원번호/등록번호
1		KR		`00. 00. 00.	
2					
3					

4-5.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수행실적(최근 3년 이내) *현재 수행중인 과제 필수작성

구분	사업명	사업기간	총 사업비 (백만원)	발주부처/ 기관	동과제와의 차별성 (필요시 별도 증빙자료 제출)
1		`00.0.~`00.0			
2					
3					

5. 사업비 집행계획

5-1. 비목별 총괄

5-1-1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목	세목	지원사업비	민간부담금(현금)	계	구성비(%)
직접비	연구시설·장비비(임차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합 계					

- ※ 사업비 계상 시에는 사업비계상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붙임. 5].
 ※ 내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작성
 ※ 지원사업비 관리 및 지출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함.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물품 구입, 시험분석 등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사용해야 함(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5-2. 비목별 세부내역

5-2-1. 연구시설·장비비(임차비)

(단위 : 천원)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건)	금액	비고
연구시설비 (임차비)					
장비비 (임차비)					
합 계					

- ※ 연구시설비 : 연구시설(동물실 사용료 등), 보육실 임대료 등 계상
 ※ 장비비 : 장비사용료 및 장비 임차료 계상

5-2-2. 연구활동비

(단위 : 천원)

세목		내역	단가	회수 (건)	금액	비고
연구 활동 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과제 운영비					
합 계						

- ※ 연구활동비(세목)-수용비 및 수수료(내역)내에 위탁정산수수료 필수 계상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1) : *in vitro* / *in vivo* 효능평가, 공정개발, 각종 시험분석, GMP 위탁생산, GLP 효능/독성시험, CRO 비용, 임상시험 등 비용 계상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2) : 비용 계상시, 진행 중 또는 진행예정인 기관·기업과 체결한 계약서 및 견적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함. 미제출시 불인정됨.

5-2-3. 연구재료비

(단위 : 천원)

세목	내역	단가	회수 (수량)	금액	비고
연구재료비					
합 계					

- ※ 실제 사용예정인 재료비 등으로 계상

[붙임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 업 명 (신청사업명)	
지원분야	☐ 창업 ☐ 연구개발 ☐ 비·임상시험 ☐ 제품화 ☐ 해외진출

☐ 신청기업의 자격기준 확인

검토사항	여	부
☐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 공고문에 명시한 지원자격(업력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	☐
▶ 지원받고자 하는 아이템의 품목이 백신 및 면역치료제 해당여부	☐	☐
☐ 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과제로 2022년도에 정부 및 정부사업 전담기관 등으로부터 사업(과제)을 수행하고 있거나 선정된 경우	☐	☐
☐ 제재조치 및 참여제한 여부		
▶ 신청일 현재 사업자 또는 대표자(신청자) 등 정부 및 정부사업 전담기관의 사업(과제)에 제재조치, 참여제한 중인 경우	☐	☐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경우	☐	☐
▶ 기업의 부도, 휴 · 폐업	☐	☐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선정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경우 예외)	☐	☐
▶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5개 센터 내 시설 · 장비 사용료 미납 기업	☐	☐

자격기준 확인결과, 위 확인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에 동의하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6월 00일

기업명 _____ 대표자 _____ (직인)

000000센터장 귀하

[붙임 3] 창업여부 기준표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 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동종 사업 개시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주주 아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대주주		창업아님
	조직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가 동일하여야 함
-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영 시행(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붙임 4] 지원사업비 계상기준

구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① 연구 시설 · 장비비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해당 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보육실 등 포함)·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② 연구 활동비	【사용용도】 1. 여비 : 국내 출장여비 2.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위탁정산 수수료 포함) 등 3. 기술정보활동비 : 전문가 활용비(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 경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문헌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4.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하는데 필요한 실제비용 * in vitro/in vivo 효능평가, 공정개발, 시험분석, GMP생산, GLP 효능/독성시험, CRO, 임상시험 등 비용 계상 5. 연구과제 운영경비 : 회의비, 사무용품비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함.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됨. <table><tr><th>철도</th><th>선박</th><th>항공</th><th>자동차</th><th>일비</th><th>숙박비</th><th>식비</th></tr><tr><td>실비 (일반)</td><td>실비 (2등급)</td><td>실비</td><td>고속·시외버스 요금 기준</td><td>2만원</td><td>서울 : 7만원 광역시 : 6만원 그 외 : 5만원</td><td>2만원</td></tr></table> ※ 출장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일비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일비 1만원을 지급 2. 위탁정산 수수료(필수) － 지원사업비 규모(현금총액) : 지원사업비 + 민간부담 현금 <table><tr><th>지원사업비 규모</th><th>정산수수료</th><th>지원사업비 규모</th><th>정산수수료</th></tr><tr><td>0.5억 미만</td><td>526천원</td><td>0.5억 이상 1억 미만</td><td>723천원</td></tr><tr><td>1억 이상 2억 미만</td><td>813천원</td><td>2억 이상 3억 미만</td><td>926천원</td></tr><tr><td>3억 이상 5억 미만</td><td>1,144천원</td><td></td><td></td></tr></table> ※ 정산수수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3. 공공요금 : 총원대비 해당과제 참여인력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계상 실집행 공공요금 × 참여인력수 총 원 × 참여인력의 평균참여율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실비 (일반)	실비 (2등급)	실비	고속·시외버스 요금 기준	2만원	서울 : 7만원 광역시 : 6만원 그 외 : 5만원	2만원	지원사업비 규모	정산수수료	지원사업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526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723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813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926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1,144천원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																									
실비 (일반)	실비 (2등급)	실비	고속·시외버스 요금 기준	2만원	서울 : 7만원 광역시 : 6만원 그 외 : 5만원	2만원																										
지원사업비 규모	정산수수료	지원사업비 규모	정산수수료																													
0.5억 미만	526천원	0.5억 이상 1억 미만	723천원																													
1억 이상 2억 미만	813천원	2억 이상 3억 미만	926천원																													
3억 이상 5억 미만	1,144천원																															
③ 연구 재료비	【사용용도】 ○ 재료비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계상기준】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붙임 5] 지원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공동사항	○ 지원사업비 관리 및 지출을 위해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독립적으로 관리해야 함. ○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물품 구입, 시험분석 등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사용해야 함(부가가치세는 기업이 부담).
① 연구 시설 · 장비비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견적서 ④ 청구서 ⑤ 거래명세서 ⑥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⑦ 임차사용 계약서 또는 사용실적서
② 연구 활동비	《국내여비》 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보고서 ③ 지출결의서 ④ 교통, 숙박 등 영수증 ⑤ 여비 산출내역서 ⑥ 계좌이체증명 《수용비 및 수수료》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에만 해당) ④ 청구서(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에만 해당) ⑤ 거래명세서 또는 고지서 ⑥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⑦ 산출내역서(공공요금) ⑧ 검수조서 《기술정보활동비》 가.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서명록 ④ 전문가활용비 지급대장 ⑤ 전문가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교통비 증빙자료 ⑥ 자문 결과보고서(증빙사진 필수) ⑦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⑧ 계좌이체증명 나.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④ 교육수료증 ⑤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다.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④ 청구서

	⑤ 거래명세서 ⑥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⑦ 검수조서 라.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④ 학회등록비 영수증 ⑤ (국외)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 ⑥ (국외)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 마. 논문게재비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④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④ 계약서 ⑤ 청구서 ⑥ 거래명세서 ⑦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⑧ 중간보고서 또는 결과보고서 《회의비》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서명록 ④ 결과보고서(증빙사진 필수) ⑤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사무용품비(소모품)》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④ 청구서 ⑤ 거래명세서 ⑥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⑦ 검수조서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④ 계약서 ⑤ 청구서 ⑥ 거래명세서 ⑦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⑧ 검수조서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④ 계약서 ⑤ 청구서 ⑥ 거래명세서 ⑦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⑧ 검수조서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④ 계약서 ⑤ 청구서 ⑥ 거래명세서 ⑦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⑧ 검수조서
③ 연구 재료비	① 품의서 ② 지출결의서 ③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④ 계약서 ⑤ 청구서 ⑥ 거래명세서 ⑦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카드매출전표) ⑧ 검수조서

[붙임 6] 지원사업비 불인정 기준

사업비 불인정 기준
《연구시설·장비비》 ①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연구시설·장비·공간에 대한 임차료 ③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금액 《국내외 출장여비》 ①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② 여비규정 외에 별도의 여비기준을 이종으로 정하여 과다 지급한 금액 ③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④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및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식대 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여비 ⑥ 부실학회(학문의 발전보다는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학회의 형식(발표 실시,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으나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회) 참가 관련 여비 ⑦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금액 《수용비 및 수수료》 ①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업운영비 성격의 경비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 전화요금 등 ③ 기업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④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금액 《기술정보활동비》 ①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②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

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 ③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④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 ⑤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⑥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연구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 ⑦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 ⑧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 ⑨ 부실학회(학문의 발전보다는 영리적 목적이 강하여 학회의 형식(발표실시, 논문출판)은 갖추고 있으나 발표 또는 심사과정을 부실하게 운영하는 학회) 참가비
- ⑩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금액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①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금액

《연구과제 운영경비》

- ①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 ②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 ③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금액

《시약·재료 구입비》

- ①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없이 집행한 금액

[붙임 7] 화순백신산업특구 현황

□ 화순백신산업특구 개요



□ 화순백신산업특구 연혁



□ 화순백신산업특구 전주기 인프라



□ 화순백신산업특구 발전전략

